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국가유산 보존처리제 제외 >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26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2
1.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국가유산 보존처리제 제외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9일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국가유산의 손상 부위에 대해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화학물질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추가함으로써 규제의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국가유산 보존처리제 제외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적용 범위) 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적용 범위) ① ----- ----- ----- -----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설>	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보존처리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령에서는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¹⁾과,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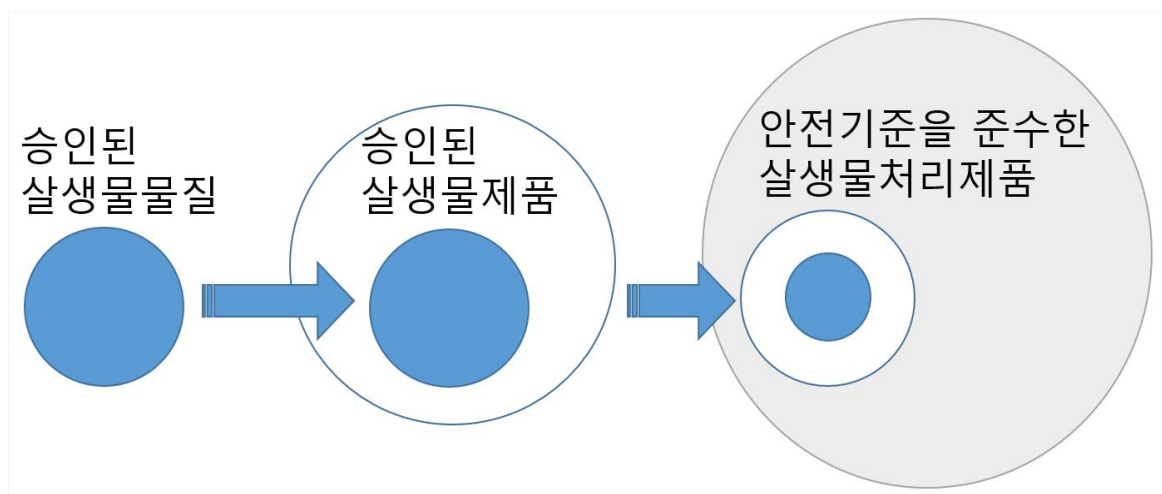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3.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등의 ‘살생물제’²⁾에 관한 안전관리 규제와 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이중 살생물제의 경우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는 살생물물질 및 ② 국내에 판매·유통하려는 살생물제품은 모두 기후에너지장관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 승인제도³⁾⁴⁾를 두고 있음.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 관계도]



이에 따라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는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6.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7.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9.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살생물물질의 특성, 노출정보, 인체 등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에 관한 시험을 거쳐 자료를 생성·제출하여야 하며⁵⁾, 이후 승인된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도 승인 절차⁶⁾를 거치는 등,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됨.

[살생물제 관리 체계]

구 분	내 용
살생물물질 승인	· 물질의 안전성·효과를 입증하여 정부 검증·승인을 받아야 함
살생물제품 승인	· 승인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야 함 · 제품의 안전성·효과를 입증하여 정부 검증·승인을 받아야 함
살생물처리제품	·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살생물제품을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종류별로 세분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
4.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 다.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 라. 효과·효능
 - 마. 분류 및 표시
5.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 나.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 다.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4.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나.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 다.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 라. 효과·효능
 - 마. 분류·표시 및 포장
5.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한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중에서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특정한 용도로 쓰이는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살생물제 등은 이 법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⁷⁾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⁸⁾에 관한 관리기준을 국가유산청이 세우도록 하면서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중복 규제를 방지하고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참고로, 국가문화유산청은 2025년 6월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적용 범위) 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5.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補助飼料)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9.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 8) “보존처리제”란 국가유산의 부패나 변질을 예방하고 보호하여 국가유산의 가치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규정 주요 내용]

-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폐지를 위한 평가 및 전문가심의회 절차 마련
- 훈증소독, 목재 방부방충제 처리, 흰개미 토양처리, 흰개미 군체제거 방제법 별 사용 가능 물질 규정
- 유해 보존처리제 사용교육 및 안전관리 규정

또한, 동 개정안은 보존처리제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보존처리제 관리기준을 국가유산청이 세우도록 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 동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